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정준호 의원 외 25명
- 나. 의안번호: 제71호
- 다. 발의일자: 2022. 8. 29.
- 라. 회부일자: 2022. 9. 2.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_s)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
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나. 소규모 배출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0조).
- 다. 소규모 배출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안 제21조).
- 라.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¹⁾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소량으로 배출하지만, 그 수가 매우 많아 관리가 필요한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비규제대상 사업장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하고,
이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제외한 세탁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시설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한 것이고,
안 제20조제2호와 제3호, 안 제21조는 소규모 배출원 규제대상에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및 직화구이 음식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이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VOCs는 방향족 또는 할로젠족 탄화수소로써 물질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체 유해성이 높은 오존의 전구 물질²⁾로 알려짐에 따라 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배출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음.

1)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온과 상압에서 대기 중으로 가스 형태로 배출되는 탄화수소류 가운데 석유 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을 이르는 말
2) 전구물질: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p> <p>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p>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2019년 서울시 VOCs 배출량은 53,177톤 수준으로 이 중 67%³⁾가 소규모 배출원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관내에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 대표적 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이 총 2만 개소 이상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규제시설인 이들의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

<2019년 서울시 관내 소규모 배출원 수(개소)>

소계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20,394	6,276	5,452	8,666

※ 자료: '19년도 통계청 사업체수 조사 자료 참조

※ 도장시설도 677개소가 존재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

- 따라서 안 제2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현행법상 비규제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연소 유발 배출원에 대한 규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조례에 근거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는 향후 VOCs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0년 5월 동 조례에 세탁소 VOCs 회수시설설치 명령 및 재정 지원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음에도, 개정 이후 2022년 9월까지 세탁소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단순히 소규모 배출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 2019년 휘발성유기화합물 소분류별 주요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세탁업 3,858톤/년, 인쇄업 6,277톤/년,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 25,685톤/년

4) 총 13개 배출원 중 '세탁'과 '인쇄업' 및 '가정/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을 소규모 배출원으로 가정

5)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한도

이들에 대한 연차별 지원방안 및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조항들은 번역 투 표현, 불필요한 단어 및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수정하여 좀 더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음.